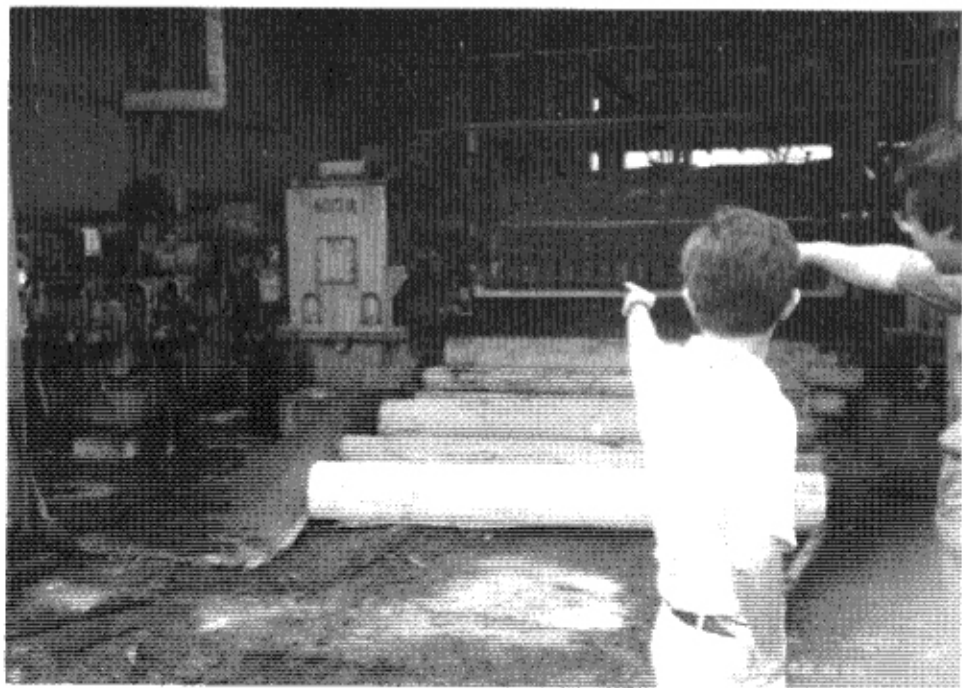


K합판 화재



K합판 화재

용접불티가 바람에 날려 보일러실에서 발화

1. 일반사항

- 건물명 : (주) K합판
- 소재지 : 부산직할시 사하구 소재
- 화재일시 : 1985년 9월 1일 17시 45분경
- 발화위치 : 본 공장내 보일러실
- 화재원인 : 용접불티 가연물에 착화

2. 공장개요

발화건물은 1979년 9월에 건축된 4개동 연면적 2,732.6m²의 합판생산이 주용도인 공장이다. 기둥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보는 철골, 바닥은 철근콘크리트, 지붕은 철골트러스 위 슬레이트로 되어 있다. 외벽은 블럭과 슬레이트이며 발화장소인 본 공장의 규모는 108m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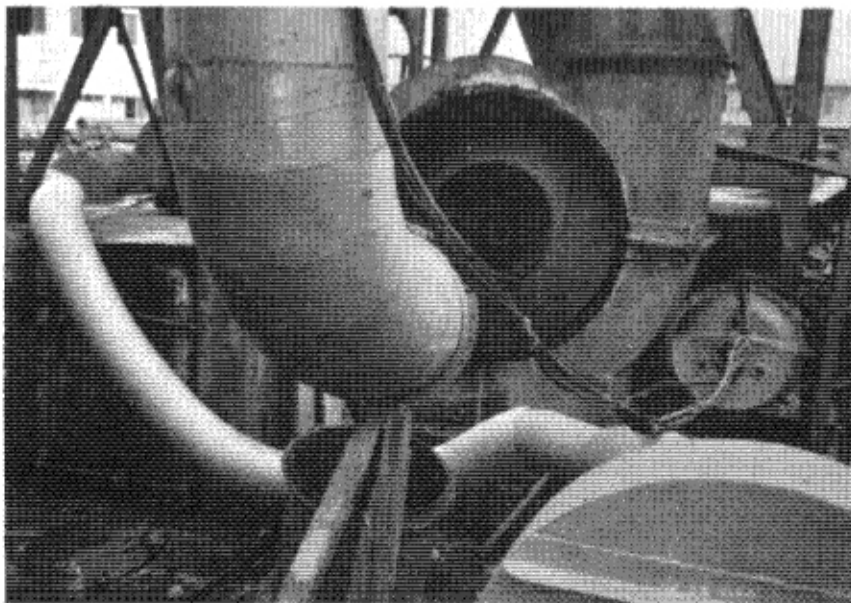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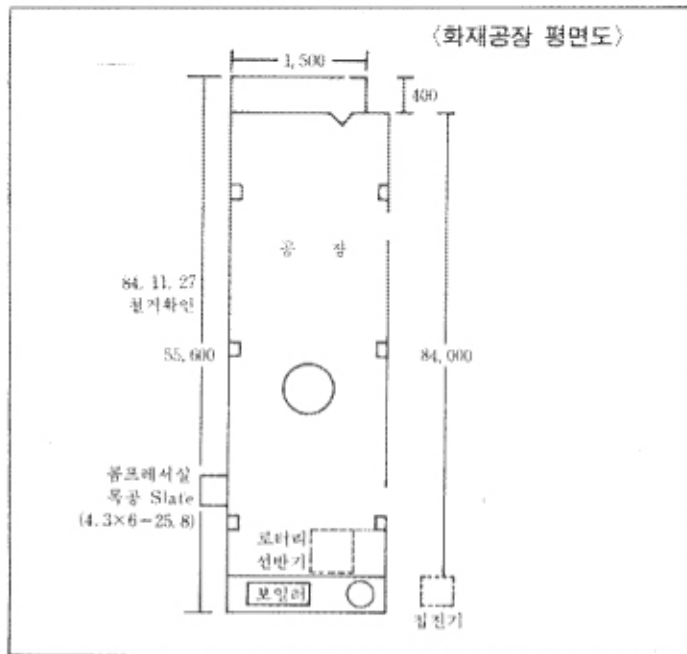
3. 화재상황

마침 화재발생일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정상조업을 하지 않았으나 본공장 완성부에서는 일부 잔업을 실시하였으며 몇 사람은 공장 외부의 집진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용접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은 16:00시까지 완료되었으므로 경비근무자 3인 외에는 전원 퇴근하였다. 화재는 공장내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보일러실은 용접장소로부터 3m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여기에 나무부스러기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용접시 바람에 의해 날린 불티에 인화되어 화재로 번져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비원들이 처음 화재를 목격하였을 때에 화재는 건조상태에 있던 보일러 연료용 화복을 태우며 연기를 내고 있었다.

보일러실은 본공장 내부에 있었으나 공장과의 사이에 방화구획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이 공장으로 번져 공장내의 기계로 옮겨 붙었다. 소방서에 신고한 시간은 17시 50분이었으며 소방대 도착시간은 17시 55분이었으므로 출동시간은 비교적 짧았다. 초기에 ABC 분말소화기를 8개 사용, 진화한 외에 나무부스러기 등의 가연물을 소화작업자들이 이격시키는 등의 노력을 한 까닭에 화재의 급속한 확대가 저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출동 소방차는 지휘차 1대, 엠블런스 1대 포함 모두 8대였다.

4. 피해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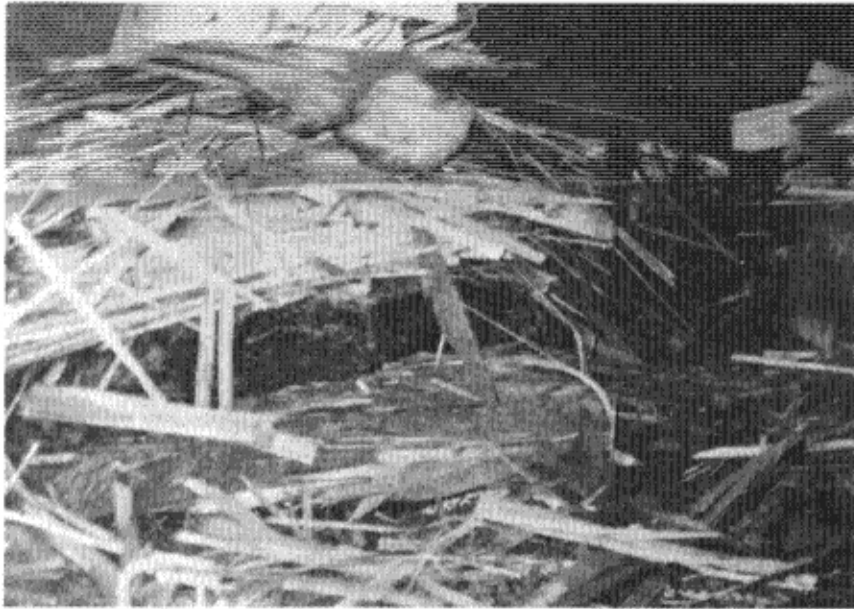
피해시 공장에는 경비근무자 3명만 있었으므로 인명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비교적 빨리 초기진화와 신속한 신고 및 출동이 이루어져서 일본산 로터리선반 1대만 소실된 결과 모두 1천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을 뿐이다. 이 공장은 9억 6천여만원의 신채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2백 3십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 집진기 용접공사 중 용접분티가 바람에 날려 공장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거리 약 3m)

5. 문제점 및 대책

이 공장은 1984년 11월 27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기 등에 대해서는 조치한 바 있었으나 보일러실 방화구획, 옥내소화전 불량 등은 개선치 않았고 용접시 작업상의 부주의 및 방화의식 불철저에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점검지적 사항의 신속한 보완과 방화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철저, 작업시 안전조치의 우선 강구가 필요하다.



▲ 공장내부 보일러 앞에 쌓아 두었던 보일러 화목용 나무부스러기에 인화 발화됨